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황 희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만화산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및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문 제목을 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”에서 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”으로 정비하고,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(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)
- 나. 만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만화 관련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, 만화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, 그 밖에 문체부 장관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(제8조 만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- 다. 만화산업 관련 통계 작성 대상으로 시장 현황, 수출 및 수입 현황, 인력 현황, 국내외 산업 동향 등을 규정(제10조 통계의 작성 대상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)”을 “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”을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”으로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
2. 주요 사업별 세부 수행 계획
3. 그 밖에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만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만화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만화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

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

2. 만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

3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, 만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(非違) 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

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제10조 (통계의 작성 대상) 법 제13조의2에 따른 만화산업 관련 통계에는
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만화산업의 시장 현황

2. 만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 현황

3. 만화산업의 인력 현황

4. 국내외 만화산업의 동향 및 전망

5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
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)	제2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	1.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
	2. 주요 사업별 세부 수행 계획
	3. 그 밖에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	③ -----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----- ----- ----- -----.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전문적·기술적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만화가, 만화 관련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만화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.	<삭제>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8조(만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

운영)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만화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만화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

2. 만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

3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, 만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③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<신 설>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(非違) 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10조 (통계의 작성 대상) 법 제13조의2에 따른 만화산업 관련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만화산업의 시장 현황

2. 만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 현황

3. 만화산업의 인력 현황

4. 국내외 만화산업의 동향 및 전망

5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463